

① 개정개요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면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별 감면율 축소 및 정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(감면내용) 사업별 차등 감면	○ (감면내용) 사업별 차등 감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법(호)</th><th>대상 사업</th><th>감면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<td>농지매매사업 등</td><td>취 50%</td></tr> <tr> <td>1-2</td><td>생산기반정비사업</td><td>취 50%, 재 75%</td></tr> <tr> <td>1-3</td><td>조성토지 처분특례</td><td>취 50%</td></tr> <tr> <td>2</td><td>경영회생지원사업</td><td>취 50%, 재 50%</td></tr> <tr> <td>3</td><td>과원 규모화 사업</td><td>취 50%</td></tr> <tr> <td>4</td><td>생활환경정비 사업</td><td>취 25%</td></tr> <tr> <td>4-2</td><td>농지 재개발 사업</td><td>취 25%</td></tr> <tr> <td>5</td><td>농지시장안정사업</td><td>취 50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법(호)	대상 사업	감면율	1	농지매매사업 등	취 50%	1-2	생산기반정비사업	취 50%, 재 75%	1-3	조성토지 처분특례	취 50%	2	경영회생지원사업	취 50%, 재 50%	3	과원 규모화 사업	취 50%	4	생활환경정비 사업	취 25%	4-2	농지 재개발 사업	취 25%	5	농지시장안정사업	취 50%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법(호)</th><th>대상 사업</th><th>감면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<td>농지매매사업 등</td><td>취 30%</td></tr> <tr> <td>1-2</td><td>생산기반정비사업</td><td>취 50%, 재 75%</td></tr> <tr> <td>1-3</td><td>조성토지 처분특례</td><td>감면 종료</td></tr> <tr> <td>2</td><td>경영회생지원사업</td><td>취 50%, 재 50%</td></tr> <tr> <td>3</td><td>과원 규모화 사업</td><td>취 50%</td></tr> <tr> <td>4</td><td>생활환경정비 사업</td><td>감면 종료</td></tr> <tr> <td>4-2</td><td>농지 재개발 사업</td><td>감면 종료</td></tr> <tr> <td>5</td><td>농지시장안정사업</td><td>취 30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법(호)	대상 사업	감면율	1	농지매매사업 등	취 30%	1-2	생산기반정비사업	취 50%, 재 75%	1-3	조성토지 처분특례	감면 종료	2	경영회생지원사업	취 50%, 재 50%	3	과원 규모화 사업	취 50%	4	생활환경정비 사업	감면 종료	4-2	농지 재개발 사업	감면 종료	5	농지시장안정사업	취 30%
법(호)	대상 사업	감면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농지매매사업 등	취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2	생산기반정비사업	취 50%, 재 7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3	조성토지 처분특례	취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경영회생지원사업	취 50%, 재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과원 규모화 사업	취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생활환경정비 사업	취 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-2	농지 재개발 사업	취 2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농지시장안정사업	취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법(호)	대상 사업	감면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농지매매사업 등	취 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2	생산기반정비사업	취 50%, 재 7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-3	조성토지 처분특례	감면 종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경영회생지원사업	취 50%, 재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과원 규모화 사업	취 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생활환경정비 사업	감면 종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-2	농지 재개발 사업	감면 종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농지시장안정사업	취 3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○ (일몰기한) <u>2025.12.31.</u>	○ (일몰기한) <u>2028.12.31.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개정내용

-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면율을 연장하고,
 - 감면율을 다른 공공기관 수준에 맞게 축소하고, 감면 필요성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비
- (감면율 축소) : 제1호, 제5호

1호	농지매매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	취 50% → 30%
1-2호	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 시설물	현행유지(취 50% 재 75%)
2호	농업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농지 등	현행유지(취 50%)
3호	FTA 피해 농어업인 경영규모 확대 지원 목적 취득 농지	
5호	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매입(간척 포함)한 농지 등	취 50% → 30%